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12일,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황충연)

현행법은 조합장·이사 등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고, 2,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비상임으로 하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은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며, 상임이사는 조합장이 이사회를 동의할 받아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 중 상임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나,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하지만, 상임이사 추천권과 총회 의장직을 맡는 등 비상임 조합장이 상임 조합장과 유사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상임 조합장과 달리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재직으로 조합의 인사·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조합원의 의사 반영 및 내부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재 전국 산림조합 142개 중 약 133개 조합이 상임 조합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9개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비상임 조합장 9명은 5선 3명, 4선 2명, 3선 3명 및 초선 1명임.

다만, 개정안의 연임 제한은 비상임 조합장에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부칙 제2조 전단의 “및 이사”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농협과 수협 등 다른 조합의 경우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 모두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림조합과 농협의 경우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연임 제한 규정이 없고, 수협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_의안번호 제2200573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_의안번호 제2212940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